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1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김동아·한준호·서삼석

허성무 • 민형배 • 최기상

박희승 • 임미애 • 정성호

정준호 · 김정호 · 복기왕

김우영 · 윤후덕 · 윤준병

전재수 · 정을호 · 김 유

김영호 • 이병진 • 허종식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,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9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·실종·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9(등록의 취소 등) ① 환	제38조의9(등록의 취소 등) ①
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	
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	
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	
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	
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	
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	
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	5
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	
된 경우 <단서 신설>	<u>다만, 「소상공인기</u>
	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
	인이 기술인력의 사망・실종
	•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
	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
	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경우는 예외로 한다.
6. •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